

‘정신의 자유’와 일본의 민주주의

— 한일 지식인과 시민의 대화를 위하여 —

다카하시 데츠야(高橋哲哉)

우선 서울대학교에 초청하여 귀중한 강연의 기회를 주신 한국문화연구소 이태진 소장님, 그리고 기초교육원 임현진 원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공표되는 날이 가까워 오면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역사교과서(후요사 발행)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도(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를 둘러싼 대립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광복과 일본의 패전으로부터 60년이 경과된 올해, 아직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일본의 연구자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은 한국의 광복과 일본의 패전으로부터 60년째 되는 해일 뿐 아니라, 한일조약 40주년, 을사조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들 조약에 대한 되물음까지를 포함하여, 우리들이 지금 한일 양국 및 동아시아 근현대사 전체를 미래 지향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공통의 과제 앞에 서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난 3.1절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한일관계의 발전을 염두에 두면서도,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뼈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사실을 규명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여,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서 행해진 과거의 보편적인 역사청산 방법입니다. 우리는 납치문제로 인한 일본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일제 치하 36년간 강제징용으로부터 중군위안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천, 수만 배의 고통을 받은 우리 국민의 분노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히 강한 인상을 받은 점은 이 발언이 ‘일본의 지성’에 대한 ‘호소’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성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진실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한일간의 감정적 대립을 해소하고,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정치적 권위주의와 마찬가지로 지적 권위주의에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어려운 문제를 꺼안고 신음하고 있을 때, 각각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력을 구사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식인·연구자의 책임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역사인식 문제에 관해서 저는 지금까지 작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부인 『전후책임론』(역사비평사), 『단절의 세기 증언의 시대』(공저, 역사비평사), 『국가주의를 넘어서』(공저, 삼인) 등이 한국어 번역판으로 나와서 다행히 여러분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긴박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도, 저는 역사인식 문제를 직접 이 강연의 테마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정신의 자유와 일본의 민주주의’라는 테마를 고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식민지 지배, 전쟁, 민족차별, 군사독재 등 폭력의 역사를 둘러싸고 가해자, 피해자, 당사자가 역사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아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식민지 지배라면 식민지 지배를, 민족차별이라면 민족차별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공유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관한 역사인식은 공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자유나 평등이나 평화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에 관한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해서는 이른바 민주적 가치관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민주적 가치관의 확립이 없다면 역사인식의 공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에는 각각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의 가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서 오늘날까지 존립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날 일본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국 헌법에 명기된 민주적인 여러 가치들이 정치권력과 시민사회 양쪽의 국가주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헌법 '개정'이라는 이름의 改惡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골치 아픈 일은 "일본은 패전 후 한 번은 민주주의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나, 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전후 60년'이 되는 올해,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란 무엇이었는가, 일본의 시민사회는 과연 한번이라도 민주적인 가치를 진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적이 있는가, 이런 물음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지점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역사인식의 문제점은 일본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대응합니다. 역사인식의 미확립은 민주주의의 미확립에, 역사인식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응합니다. 저는 역사인식 문제에 비해 한국에서 이야기되는 빈도가 낮은 일본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특히 시민적인 '정신의 자유'를 둘러싼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실마리 삼아 대화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신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100년 이상 전, 청일전쟁 전인 1891년까지 시계바늘을 되돌려 봅시다. 이 해의 1월 9일, 도쿄의 제1고등중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해인 1890년에 이른바 '교육칙어'가 메이지 천황의 이름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교육칙어'는 '忠君愛國'의 도덕을 설파하고, "국가의 위기 시에는 천황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충성을 다하라"고 가르치는 천황의 말로, 구 제국시대에 일본 교육을 지배한 경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제1고등중학교의 교육칙어 봉독식(奉讀式), 즉 교원과 학생 전원이 칙어를 받아들여 집단으로 읽는 의식 중에 일어났습니다. 위탁교원인 우치무라 간조(内村鑑

三)가 칙어 말미에 있던 메이지 천황의 서명에 깊숙이 고개 숙여 배례해야 함에도, 순간 기독교인으로서의 ‘양심의 가책’으로 ‘주저’하여 가벼운 인사만 했던 것입니다. 이 행위가 국가원수에 대한 ‘불경’에 해당한다는 각 방면에서의 맹렬한 비난으로, 결국 그는 사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우치무라 간조 ‘불경사건’이라 불리는 일입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그 후 3개월 동안 ‘사회적 파문’ 상태에 몰렸고,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내까지 격심한 폐렴에 걸려 옳고 맙니다. 심신이 한없이 지쳐버린 우치무라는 에치고(현재의 니이가타)의 다카다라는 곳으로 옮겨 요양했고, 거기서 미국인 친구 엘프래드 스트라저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중 한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처지가 인간의 자식 중 최악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친구여, 그대는 망가진 가정, 나빠진 건강, 부풀려진 오해, 그렇게까지 사랑한 국민에 의한 박해, 이것들이 한꺼번에 한 사람을 급습한 상태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나는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적 자유(liberty)와 신교의 자유(freedom of conscience)란 거기에 헌신한 자들이 그에 걸맞는 시련을 겪지 않고는 어떤 나라에서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일본의 민주주의, 특히 시민적 ‘정신의 자유’가 위기에 처한 지금, 저에게 이 우치무라 간조의 말은 예언과 같은 울림을 줍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후 근대 통일국가로서의 체제를 급속히 정비했습니다. 1889년에는 ‘대일본제국 헌법’(이른바 ‘메이지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제28조에는 “일본신민은 안녕 질서를 저해하지 않고 신민의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信敎의 自由를 갖는다”고, 제한은 붙어 있으나 ‘신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치무라 간조는 이 ‘불경사건’의 경험을 통해 천황제 국가 권력으로부터 ‘하사’된 ‘신교의 자유’가 실은 거짓 자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치무라는 ‘정치적 자유와 신교의 자유’라고 썼습니다.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는 국가의 주권자는 “통치권을 총괄하는”(제4조) 천황이었으며, 천황의 ‘신민’인 국민에게 진정한 ‘정치적 자유’는 없었습니다. freedom of conscience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제19조), 일본국 헌법에서는 ‘사상·양심의 자유’(제19조)이지만, 사상·양심의 자유는 원래

종교전쟁 후 웨스트팔리아 조약에서 승인된 서구적 '신교의 자유'에 기원을 둡니다. 그것이 근대국가에서 세속화·일반화되었는데, 우치무라는 이것을 '신교의 자유'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자유, 사상·양심·신교의 자유 모두, 그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활과 경험 속에서 갈망하지 않는다면, 또한 이를 억압하는 세력이 있으면 싸워서라도 획득하려 한 것이 아니라면, 危弱한 체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치무라의 말은 이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100년 이상이 경과한 오늘날, 그 때와 달라진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의아해 할 만한 사태가 일본의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실까요? 구 제국 시대부터 사실상 일본의 국가였던 '기미가요' 제창과 국기였던 일장기 게양이 졸업식·입학식과 같은 학교 행사에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80년대 후반에 문부성의 지시로 강제력이 강화되었고, 1999년 국기국가법 성립으로 일장기·기미가요가 정식 국기·국가가 된 이후 한층 심해졌습니다. 피폭지로서 평화교육이 활발했던 히로시마현 등 몇몇의 저항거점이 사라진 현재, 우익정치가로 알려진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의 주도 하에 도쿄도에서는 국기게양과 국가제창이 이상할 정도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기미가요 제창을 위해 피아노 반주를 지시받았으나 기독교신자로서 천황을 찬양하는 연주는 할 수 없다고 거부한 음악교사, 천황제 국가의 상징으로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기억으로 이어지는 노래는 연주할 수 없다고 거부한 교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유로 기미가요 제창 때 일어서기를 거부한 교원들이 작년 봄까지 약 300명 가깝게 직무명령 위반으로 처분되었습니다. 학교 행사에서 기미가요·일장기를 강요하는 일은 현대의 교육칙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현, 구루메시, 마치다시 등의 교육위원회는 기미가요 제창 때 학생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지 성량을 문제 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머리를 숙였는지가 문제가 된 우치무라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지사의 주도 하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쿄도 교원위원의 한 사람인 도리가이 겐(일본을 대표하는 상사 중 하나인 '마루베니'의 사장)의 말을 소개해 봅니다.

(일장기·기미가요에 반대하는 사람은) 철저히 분쇄하지 않으면 화근이 된다. 특히 반세기 동안 눌러 붙어온 암이니까, 흔적을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증식하니까.

물론 강요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과감하게 재판투쟁에 나섰으며, 이를 지원하는 시민운동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의 사법부는 교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입장으로, 직무명령 자체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처분을 세 번 받으면 면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아노 반주 거부나 기립 거부를 선택하는 일은 직업을 건 싸움이 됩니다. 그래도 싸우고 있는 교원은 우치무라 간조가 말하는 “그에 걸맞는 시련” 속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우치무라 간조는 교육칙어 예배는 비판했지만, 교육칙어의 내용 자체는 수용했습니다. 청일전쟁 때에는 ‘문명국’ 일본에는 ‘자유정치’가 있고 ‘자유종교’가 있다고 하면서 ‘의전론(義戰論)’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전쟁의 비참함을 깨닫고는 ‘의전론’을 철회하여 러일전쟁 때에는 ‘비전론’을 주창했지만, 정치적 자유나 신교의 자유라는 이념까지도 ‘문명’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치무라 간조는 3.1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조선에서 저지른 일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인이 문제 삼고 있는 잔학 사건의 대부분은 하찮은 날조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르게 판단해주실 겁니다. (미국인 D. C. 벨에게 보내는 서한, 1919년 8월)

3·1운동에 대한 일본의 大 탄압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주님은 “우리들을 바르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라거나, 잔학행위가 있었다고는 믿지 않는다거나 하는 마음의 동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치무라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조선의 정치적 상황에 ‘동정’을, 또한 조선의 기독교 발전에 대해 일본 이상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식민지 통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100년 후의 일본인은 우치무라가 직감한 '주어진 자유'의 나약함을 자각하면서, 당시 우치무라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학교행사에서의 국기·국가의 강요는 현대 일본에서 헌법 제19조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양심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 테마로 고른 '정신의 자유'란 일본국 헌법에서 보자면, 제19조 '사상·양심의 자유', 제20조 '신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제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금지', 제23조 '학문의 자유'에 대응합니다. 흥미롭게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양심의 자유'가 제19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가 제20조, '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금지'가 제21조로 일본국 헌법에 대응하며, 단 '학문·예술의 자유'만이 제22조로 약간 다를 뿐입니다. 헌법 수준에서 보자면 한국과 일본은 '정신의 자유'에 관한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현재 이들 가치가 어떤 상황인가, 일본과 상이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 하에서 이들 가치를 둘러싸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여쭙어 보아야 하겠지만, 일본에서는 현재 이들 가치가 명백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 제 20조에 보장된 '신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에 관해서는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가 가장 알기 쉬운 예라고 생각됩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둘러싼 문제는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는 4월 10일에 출간할 예정인 『야스쿠니 문제』라는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건을 정리했는데, 그 제1장은 '감정 문제', 제2장은 '역사인식 문제', 제3장은 '종교 문제', 제4장은 '문화 문제'로, 크게 나누어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감정 문제'란,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적 기능이 유족과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여 전쟁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전쟁에 국민을 동원해 협력시킨다는 것입니다. 장병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유족은 원래 '슬픔'에 빠져야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에 전사자를 '영령'으로 합사(合祀하여 천황과 국가를 위해 '명예롭게 전사했다'고 찬양함으로써, 유족은 역으로 '뿌듯한' 감정을 갖게 되고, 국민들 또한 '그들을 본받아, 그들에 이어 천황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은 한 마디로 전몰장병의 죽음을

을 애도하는 ‘추도’ 시설이 아니라, 그 죽음을 찬양하는 ‘현창(顯彰)’ 시설인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가 관여한 구 일본제국 전쟁의 침략적 성격, 야스쿠니 신사가 신도(神道) 시설이라는 특수한 성격 등을 제외하고 전사자의 현창시설로서만 일반화한다면, 이런 시설은 일본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 존재할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죽는다(Pro Patria Mori)”는 일을 성스러운 행위로 찬양하는 국가의례는, 역사가인 에른스트 칸토로비치(Ernst Kantorovich)나 조지 모세(Georges L. Mosse)가 논했듯이,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로마로부터 근대국가로 이어지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는 전쟁기념관이나 국립묘지(현충원)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이나 국가의례를 역사학·철학·정치학 등의 관점에서 비교 연구하여, 닮은 점과 다른 점을 논하는 일은 공동연구의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문제’란,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의 비판을 일본과의 ‘문화의 차이’나 ‘생과 사에 대한 관점 차이’를 무시한 간섭이라고 배척하려는 논의의 문제입니다. 이런 논의는 조잡한 것에서 비교적 세련된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주 눈에 띄는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중국 문화는 중죄인이 죽어도 ‘용서하지 않는’ 문화이지만, 일본 문화는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죽으면 ‘용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A급 전범’이라도 죽으면 용서받는데,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는 ‘일본 문화’나 ‘중국 문화’ 등 一國家 단위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소박한 논리를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 설사 그런 논리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타국이나 타민족과의 역사적 관계로부터 분리시켜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인은 자주 ‘일본문화는 용서하는 문화’라고 말하는데, 야스쿠니 신사는 A급 전범은 ‘용서’하지만, 천황의 군대에 적대하여 죽어간 자들은 외국인이든 일본인이든(내전의 경우) 결코 ‘용서하지 않는’ 신사입니다. 중세 이후의 무사 문화 중에는 불교의 ‘원친평등(怨親平等)’ 사상에 의한 ‘피아공양(彼我供養)’ 관념이 있어, 몽고(元)군의 습격을 받은 후 호조 도키무네(北條時宗)를 비롯한 적국의 전사자를 공양한 사례가 종종 있긴 하지만, 근대 일본국가가 ‘발명’해 낸 야스쿠니 신사는 그러한 ‘전통’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인식 문제'란 무엇일까요?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한국정부나 특히 중국정부는 A급 전범을 찬양하고 전쟁 책임을 애매하게 만든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물론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A급 전범에 국한시키는 일은 중국이나 한국 측에서 보자면 일종의 정치적 타협일 것입니다. 전쟁 책임을 당시의 지도자에 집중시킴으로써, 그 외의 문제에는 입을 다물어 버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가령 야스쿠니 신사가 A급 전범의 분사(分社 :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없어지게 되면 중국정부나 한국정부는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지 않으리라 상상되지만, 그것으로 전쟁 책임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며, 역사인식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A급 전범이 분사되면 천황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부활하겠지만, 메이지 천황의 명령으로 만든 '천황의 신사' 야스쿠니의 전쟁 책임도 남게 됩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A급 전범이란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1928년 이후 일본의 전쟁 책임, 즉 '만주사변' 이후의 전쟁 책임을 묻는 데에 피고가 된 자들이란 점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1869년에 창설되어 1874년 일본군의 대만출병 이래의 모든 전쟁과 식민지 탄압으로 인한 사망자를 합사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강화도 사건,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 일본의 한국침략 과정에서의 전사자, 야스쿠니 신사에서 '한국 폭도 진압사건', '비적·불정(不逞) 조선인 토벌' 등으로 부르는 식민지 탄압 때 사망한 일본군 전사자를 포함해, 구 일본제국의 식민지 획득, 식민지 지배를 위한 군사행동의 전사자까지 합사되어 있습니다. 'A급 전범'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던 도쿄재판의 범주에 국한될 뿐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적 책임은 이러한 의미에서 전쟁 책임을 넘어, 일본 근대의 식민지주의 전체의 책임으로서 되물어져야 합니다. 현재 한국 유족들이 道義 없는 야스쿠니 신사에의 합사를 그만두게 하려고 일본 재판소에 제소 중입니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주의 위에 전시동원이 겹쳐 일어난 심각한 피해입니다. 유족들의 합사 취소를 거부하여 한국이나 대만 출신 전사자의 합사를 계속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태도가 얼마나 부조리한가를 저도 계속 호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가령 야스쿠니신사로부터 A급 전범이 분사되었다고 합시다. 또한 한국, 대만, 그리고 일본인 유족 중 일부로부터도 제소되고 있는 합사 취소 요구에 야스쿠니 신사가 응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아직 일본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야스쿠니 문제’가 남습니다. 일본 수상이나 천황의 야스쿠니 참배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일본국 헌법의 정교분리 규정은 ‘국가 및 그 기관’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금지하고(제20조 제3항), 또한 ‘공금’을 ‘종교상의 조직 혹은 단체’를 위해 지출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89조). 이미 지적한대로 메이지 헌법 하에서는 제한적으로 신교의 자유가 인정되었고, 법제도 상의 ‘국교’는 없었으나 사실상 신도가 국교화되어 ‘국가신도’로서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 정점에는 이세(伊勢) 신궁이 있었고,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에 직결된 신사로서 특별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식민지에도 많은 신사를 만들고, 한국에서도 조선신궁 등에 대한 신사참배를 강요해 한국인들의 신교의 자유, 정신의 자유를 빼는 우를 범한 것은 이 국가신도 체제 하에서였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과감하게 저항하여 많은 순교자가 생긴 것도 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본국 헌법의 정교분리 규정은 국가와 신도가 결합하여 범한 그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구 제국시대에는 국가 기관이었지만, 패전 후에는 민간 신도계 종교단체이며 종교 법인법상 ‘종교법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사에 수상이 참배하는 일은 국가의 종교 활동이 되며, 국가가 특정한 종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이므로, 헌법 위반이 아니냐고 일본 시민들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재판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 문제로 일본의 사법부가 명확한 위헌판단을 내린 것은 1991년 1월 이와테 야스쿠니 소송·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와테현 의회가 천황과 수상의 공식참배를 요구하는 결의를 낸 데 대해 이와테현 주민들이 일으킨 소송으로, 센다이 고등재판소는 수상과 천황의 참배가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위헌 행위’로 단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국가는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에 상고했지만 각하되어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은 최종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의 공식담배는 중국정부가 정식으로 비판한 처음 사례로 중요하지만, 이 담배에 대해서는 즉각 3건의 위헌 소송이 일어나, 1990년대 초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하나는 위헌 판단까지 가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고, 또 하나는 '공식담배를 계속하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하나는 공식담배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개 확정 판결 중 두 개가 위헌 판결로 기운 셈인데, 세 가지 판단 중 합헌 판단을 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이즈미 수상의 담배에 대해서는 현재 6개의 재판소에서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중 6건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 국가와 고이즈미 수상은, 수상의 담배는 개인으로서의 '사적 담배'이므로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나온 6건의 1심 판결 중 공적이라고도 사적이라고도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이 2건, '공식 담배'로 인정했지만 위헌판단은 내리지 않은 것이 3건입니다. 작년 6월에 내려진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의 판결에서는 '공식 담배'로 인정하고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6건의 판결 중 후쿠오카 지방 재판소만은 피고인 국가가 공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의 가메가와 재판장은 위헌판단을 내렸을 때의 우익의 공격을 예상하고, 유서를 쓰고 판결에 임했다고 합니다. 고이즈미 수상은 이 위헌 판결이 내려진 날 하루에 10번이나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데, 이는 수상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말해 줍니다.

고이즈미 담배 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 하나는,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된 소송의 원고단 639명에 다수의 한국인 유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된 두건의 소송 중 하나의 원고단 236명에 다수의 대만인 유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의 나카소네 수상 때와는 달리 21세기 고이즈미 수상의 담배에 대한 법정 투쟁은 일본인뿐 아니라 동아시아 시민 공동의 투쟁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담배가 문제가 된 재판에서 확정판결은 지금까지 전부 5건 있는데, 수상 담배가 '합헌'이라고 판단된 건은 하나도 없고, '위헌' 혹은 '위헌의 소지 있음' 혹은 '반복하면 위헌'이라는

판단이 4건 있습니다. 이는 수상이나 천황의 야스쿠니 참배를 정착시키고 싶은 정치세력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자유민주당은 헌법 제20조의 개정이라는 대담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은, 위헌이라는 몇몇 판례에도 불구하고, 수상의 반복되는 야스쿠니 참배로 공동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헌법개정을 통해 그 원칙 자체를 수정하면서 수상의 참배를 동시에 ‘합헌’화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민당의 개헌 전략이란, 국가가 종교적 활동에 관여할 경우, ‘사회적 의례’ 혹은 ‘관습적 행사’로 간주될 수 있다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에 의하면 수상이나 천황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종교적 목적이 아니라, ‘전몰자 추도’라는 ‘사회적 의례’ 혹은 ‘관습적 행사’이기 때문에 정교분리에 위배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논리는 구 제국시대에 ‘국가신도’를 전 국민에게 강요한 ‘신사 비종교’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즉 신도를 법제대상 불교나 기독교 등의 ‘종교’와 구별하여 ‘국가의 제사’로 규정하고, ‘특정 종교’가 아니므로 불교신자든 기독교신자든 온 국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변한 논리와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 ‘신사 비종교’론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 서민 사이에 신사는 일본의 ‘관습’ 중 하나로서 기독교와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의식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헌법개정의 위험한 의도를 간파하고, 신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여부는 일본의 민주주의와 ‘정신의 자유’라는 문제의 커다란 분기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본국 헌법 제 19조가 규정하는 ‘사상·양심의 자유’의 위기로서 국기·국가의 강요를, 제 20조가 규정하는 ‘신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위기로서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와 20조 개헌론의 등장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헌법 제 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금지’의 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미디어에서도 거론된 NHK 프로그램에 대한 압력 문제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30일에 방영된 NHK의 ‘전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문제시되는 戰時 성폭력’이 자민당 유력 정치가의 압력

으로 내용이 꺾이기만 남고, 통상 44분인 프로그램이 40분으로 단축되는 등 이상한 형태로 방영된 사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라는 4회 연속 시리즈 중 제2회분으로, 2000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를 심판하는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을 다루었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4회 시리즈의 첫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과거 유대인 학살 책임문제, 세 번째는 현대에도 빈발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 네 번째는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의 인권 침해 사건을 처리한 '진실 화해 위원회' 문제와, 20세기에 자행된 '인도(人道)적 범죄'의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세계적 흐름 안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4회 시리즈 전체에 논평자로 출연했기 때문에, 제 2회 프로그램 압력 사건에 당사자로서 관계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방영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방영 직후부터 문제가 되었고,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방영 이틀 전 추가촬영에 임했을 때 대본과 방영 내용이 너무나 달라 "사전에 무엇이 지워졌는가"라는 논고를 발표했고, 삭제된 출연자의 코멘트나 VTR 항목을 명확히 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 4년간 정치가의 압력에 대해서는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궁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NHK의 프로듀서로 프로그램 제작 때 실무담당이었던 분이 "정치적 압력으로 개편되었다"는 내부 고발을 했고, 아사히 신문이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와 나카가와 아키이치 경제산업 대신이 관여했다는 보도를 내보냄으로써 일거에 정치문제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베씨와 나카가와씨는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부정했고, NHK도 아사히 신문의 보도를 '허위보도'로 규정했지만, 양측의 변명 모두 의심스러운 점이 많을 뿐더러, 정치적 압력으로 프로그램이 변경된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기이한 프로그램 개편은 아베씨나 나카가와씨가 중심이 된 자민당 내 의원 모임 '일본의 전도(前途)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들 모임'이 방영 전에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NHK 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를 지적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길이 없습니다. '일본의 전도(前途)와 역사교

육을 생각하는 의원들 모임'이란 어떤 단체일까요?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거론되는 데에 위기감을 느껴, 그 부분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려 해 온 의원들의 모임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동일한 사상과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단체입니다. 작년 대학입시 센터 시험(전국 공통 학력 시험)의 '세계사' 시험에, '일본 통치하의 조선'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연행'이 정답인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문제 작성자의 이름을 공표하라고 집요하게 몰고 늘어지면서 '만드는 모임'과 함께 항의한 것도 이 단체였습니다. 발족 시에는 나카가와 아키이치 의원이 회장, 아베 신조 의원이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역사교과서로부터 중군위안부나 강제연행이라는 말이 줄어서 잘 됐다"고 발언한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성 대신도, 올해 6월에 이 발언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시모무라 문부과학성 정무차관도 이 '의원들 모임'의 유력 멤버입니다. NHK 프로그램 압력 사건 때에는 아베 신조 의원은 내각 관방 부장관이었고, 현재는 '차기 수상'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이 모임의 유력 멤버는 현재 일본의 정치권력이나 문부과학성 행정부의 상층부를 지배하고 있고, 올해 '만드는 모임' 교과서의 검정 합격과 채택을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국제법상의 책임을 확인하고, 일본정부에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를 낸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법률가나 학자가 검사로 참가했고, 피해자나 가해병사나 학자들의 증언이나 증거에 기초하여 국제법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판결을 구하는 기획이었습니다.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과 쇼와 천황의 군 최고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정을 20세기의 '과거 극복' 노력의 한 예로서 평가하고 그 의미를 논하고자 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모임'의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내용에 압력을 가하고자 했더라도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즉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국가와 천황의 책임을 거론하고자 한 프로그램이 우파 계열 국회의원 단체의 공격을 받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공공방송인 NHK 프로그램이 방영 전에 정치가의

압력으로 내용을 변경한 것이니, 이는 사실상 '검열'이자 '표현의 자유'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가 침해된 사건입니다. 출연한 모든 논평가들의 언급은 물론, 게스트 논평가였던 요네야마 리사 캘리포니아 대학교 조교수의 언급도 왜곡되었으니, 이는 '학문의 자유'(일본국 헌법 제23조)에 대한 침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이 현대 일본에서의 '사상·양심의 자유', '신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금지'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태입니다. 또한 그 가장 전형적인 예로서 국가·국가의 강요문제,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문제, NHK 프로그램 개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이하의 두 가지를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우선 헌법에 보장된 '정신의 자유'의 위기, 즉 민주적 가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정신의 자유'의 위기는, 일본의 경우 구 제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청산되지 않은 '부(負)의 역사적 유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장기·기미가요, 야스쿠니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모두 천황제의 존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장기·기미가요는 천황제의 상징, 특히 기미가요는 천황을 찬양하는 노래이며,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의 신사'이며,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은 천황의 전쟁 책임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즉 현대 일본에서 '정신의 자유'의 위기는 천황제를 핵심으로 하는 구 제국시대 제도에 관련된 문제로서, 결국에는 전쟁 책임과 역사인식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앞에서 인용한 우치무라 간조의 말을 상기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내 처지가 인간의 자식 중 최악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친구여, 그대는 망가진 가정, 나빠진 건강, 부풀려진 오해, 그렇게까지 사랑한 국민에 의한 박해, 이것들이 한꺼번에 한 사람을 급습한 상태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나는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적 자유(liberty)와 신교의 자유(freedom of conscience)란 거기에 헌신한 자들이 그에 걸맞는 시련을 겪지 않고는 어떤 나라에서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 드린 일련의 일들을 포함한 현대 일본의 민주적 가치의 위

기, ‘정신의 자유’의 위기를 생각하는 데에도, 우치무라의 이 관점이 중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우치무라의 시대, 메이지 헌법은 국가권력이 천황의 이름으로 사람들 (people)에게 ‘하사’한 것으로,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치무라는 자신이 받은 박해와 그에 대한 힘든 투쟁 속에서, 주어진 ‘자유’의 위약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일본국 헌법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획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국 헌법에 있는 정치적 자유와 사상·양심·신교의 자유 등의 보장은, 일본 사람들 다수가 구 제국체제에 반대하고 체제를 해체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패전으로 인해 굴러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에게 이 헌법이 기본적으로 민주적이고 급진적인 평화주의를 표방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패전 직후의 일본인은 식민지 지배나 침략전쟁으로 신음한 이민족의 사람들을 깡그리 잊었거나 잊은척 함으로써, ‘이로써 더 이상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신헌법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패전 후 일본의 민주세력, 즉 넓은 의미에서의 혁신세력은 일본국 헌법의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지키는 일, 보수세력의 ‘개헌’을 저지하는 일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스스로를 ‘호헌파’로 불러 왔습니다. 저도 이 ‘호헌파’의 흐름에 이어지는 사람이지만, 기존의 ‘호헌파’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 평등, 평화 등의 민주적 가치가 패전에 의해 굴러들어온 것이고, 자신들의 힘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약점을 덮어 두려는 경향입니다. ‘호헌파’는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 헌법의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는 일본인 300만, 아시아인들 2000만이라는 ‘그 전쟁’에서 사망한 이들의 희생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기할 수 없다고... 그러나 여기에는 교묘한 바뀐치기가 존재합니다. ‘그 전쟁’의 방대한 희생자는 일본인들(People)이 당시 일본제국의 체제를 비판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희생이 아닙니다. 역으로 일본인들이 당시 일본의 체제를 비판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체제를 용인하고 ‘일억옥쇄(一億玉碎)’해서라도 천황제 국가를 지키려 한 결과 발생한 희생인 것입니다. 본래 그 체제는 패전을 기다리지 말고 일본인들 스스로의 손으

로 무너뜨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잊은 것인지, 아니면 잊은척 하는 것인지, 마치 일본국 헌법의 민주적 諸가치를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 얻은 것처럼 말해 온 데에, 종래 '호헌파'의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일본국 헌법 자체에 내재하는 모순이나 문제점을 자각할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각했다 하더라도 유아무야 처리해 온 점입니다. 그것은 일본국 헌법의 민주적 諸가치(자유, 평등, 평화 등)와, 상징천황제 사이의 모순입니다. 일본국 헌법은 제1장에서 천황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조에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구 헌법시대의 천황제와는 다르지만, 패전 당시의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을 면제해 주고, 그를 천황의 지위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일본정부와 미국(맥아더 사령부)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정부는 '國體'를 바꾸고 싶지 않았고, 미국(맥아더 사령부)은 일본점령과 이후 냉전 하에서의 반공정책에 천황과 일본의 보수 세력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양자의 이해가 합치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맥아더 사령부)은 천황의 전쟁 책임 추구를 바라는 소련,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일본의 재군비화 금지를 보증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전쟁방기뿐 아니라 전력보유 불가, 국가의 交戰權 否認이라는 철저한 평화주의를 취한 제9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9조는 제1조를 집어넣기 위해 넣은 조항이며, 급진적인 평화주의는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장치(balancer)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호헌파'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9조 '개헌'의 여지를 주게 될지도 모를, 실현가능성도 없는 제1조의 '개헌'을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현재의 천황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삼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헌파'가 제9조를 지키는 것에만 전념한 결과, 제1조에서 천황제가 존속한 것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문제 삼을 새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신의 자유' 문제가 히노마루·기미가요 문제이든, 야스쿠니 신사 문제이든, NHK 프로그램 개편 문제이든, 모두 천황제에 관계된 문제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일본의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것은 그만큼 간단한 작업

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교정치학자로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관심을 지닌 일본의 지식인·시민의 일원으로서 말하자면, 저에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눈부시게 보이는 것은 지금 지적인 두 가지 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민주주의는 한국인들(People)의 힘으로 오랜 기간 괴로운 ‘시련’을 거쳐 싸워서 얻은 것입니다. 1948년의 대한민국 헌법 제정으로 당연히 보증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라 불리는 역대정권에 의해 저지되어 온 민주주의를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도 시민의 민주화 운동으로 획득했습니다. 그러한 일종의 ‘시민혁명’ 경험을 일본은 아직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공화제 국가이며, 이 점이 主權在民이라 하면서도 헌법 제1조에서 상징천황제를 정한 일본과의 커다란 차이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헌법학자는 일본은 “한없이 공화제에 가깝다”고 말해 왔지만, “공화제에 가깝다” 대신 “공화제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천황제가 존속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일본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임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입니다. 저 자신은 언젠가 “공화제이다”라고 단언하게 되지 못한다면 일본의 민주주의는 언제까지고 위태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의 민주주의, 그리고 ‘정신의 자유’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위기와 대결해 ‘시련’ 속에서 ‘정신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 일본에도 존재합니다. 천황을 찬양하는 기미가요 노래의 강제에 항의하다 처분당해, 사상·양심의 자유를 찾아 법정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교원들,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항의해 철거한 정교분리를 요구하며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정치압력에 의한 프로그램 개편에 항의해서 내부고발당한 NHK 직원들, 그들과 연대해 보도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 확립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 외, 일본 각지에서 민주적 諸가치 실현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시민들은 정치적으로는 현재 열세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과 연대해 움직이고 있는 저와 같은 연구자들은, 피로운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민주적 諸가치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지식인이나 시민 여러분과의 연대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근현대사의 고통으로 가득 찬 과거에 관한 역사인식의 '공유'는 자유, 평등, 평화 등의 민주적 諸가치의 '공유'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왜 잘못이었으며, 부당한 것이었는가. 그것은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들의 자유를 빼앗고 평등을 부정하고 평화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일본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대결하고, '정신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적 諸가치를 일본의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와중에, 과거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역사인식을 일본의 국가와 사회가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국가와 사회가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일본이 언젠가 용서받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세계에 대해 식민주의의 극복과 민주적 諸가치 실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꿈꾸는 것입니다.

(필자: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번역자: 김항(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